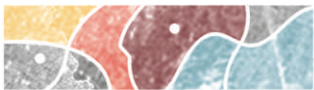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세미나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과 문화거버넌스



일시 | 2014. 3. 19(수) 14:30~17:00

장소 | 광주문화재단 다목적실

주최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주관 | 광주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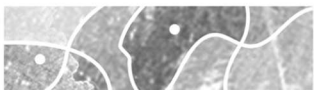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세미나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과 문화거버넌스



일시 | 2014. 3. 19(수) 14:30~17:00

장소 | 광주문화재단 다목적실

주최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주관 | 광주문화재단





## 세부 일정

---

14:30~14:35(05분)	개회	인사말 및 축사 김 성(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남송우(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14:35~14:40(05분)	경과보고	지역문화진흥법의 발자취 황순주(경기문화재단 기획팀장)
		※ 사회 : 류재한(전남대 불문과 교수)
14:40~15:10(30분)	주제발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구성을 위한 주요이슈 검토 조광호(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15:10~16:10(60분)	주제토론	시행령(안)에 대한 제언과 문화분권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김기곤(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승현(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장) 김중휘(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16:10~17:00(50분)	자유토론	발제·토론자 및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참여자, 방청객

# 차례

---

## 주제발표 7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구성을 위한 주요이슈 검토  
조광호(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주제토론 25

- 시행령(안)에 대한 제언과 문화분권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김기곤(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승현(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장)  
김종휘(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 참고자료 45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 지역문화진흥법안 제정안
- 지역문화진흥법안 전문

## 주 제 발 표

---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구성을 위한 주요이슈 검토

조광호(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구성을 위한  
주요이슈 검토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CONTENTS

CHAPTER.01

지역문화진흥법 개요

- 주요내용  
- 목적과 의의

CHAPTER.02

시행령 위임사항의 주요내용 검토

- 검토 주요내용

CHAPTER.03

법 주요이슈 검토를 통한  
시행령 기초안 구성

- 시행령 기초안 구성의 기본원칙  
- 시행령 기초안 구성 · 검토

## 지역문화진흥법 개요

###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법의 목적을 정함
-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 제3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등)

- 지역문화진흥법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개념 및 방향과 그에 따른 원칙, 법률적 관계를 설명
- 지역문화정책의 총체적 틀이 되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중앙정부인 문체부에서 수립함에 대해 중요하게 설명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개념, 작성주체 및 수립절차, 계획 수립 시의 주요내용에 대한 주요사항을 규정

### •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 제7조 (생활문화 지원)
- 제8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제9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 지역문화의 직접당사자이자 근본주체인 지역민이 스스로 문화적 삶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생활문화의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규정
- 특히 시설 및 공간의 제공과 그에 따른 예산지원에 초점을 맞춤
-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되는 문화권의 확보와 문화격차 해소의 차원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명기

●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 제10조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 (지역문화실태조사)
- 제12조 (협력활동지원)
- 제13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자문사업단)

- 지역문화진흥의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 지역문화 전문인력 및 문화환경, 정책역량의 강화, 문화협력 및 연계에 대해 논의하고 명시
- 지역문화 진흥의 기반으로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과 규정을 명시
- 지역의 문화환경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실시에 대해 언급
-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자문사업단의 설치를 제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을 제시

●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 제14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 제15조 (문화도시의 지정)
- 제16조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 제17조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 제18조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 지역문화진흥의 주요사안으로서 문화도시와 문화지구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제반 법규정을 명시
- 문화도시에 대한 심의 및 지정 / 지원사항 / 지정취소 등 문화도시 조성 및 관리 전반에 요구되는 중요사항 명시
- 문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을 명기 (문화예술진흥법으로부터 이관)

●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 제19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제20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에 대한 지원)
- 제21조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 제22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사업의 추진에 있어 지역에서의 실행 및 지원주체가 되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관련사항을 제시
- 이와 함께 지역문화진흥정책 및 사업의 추진과 활성화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련 재정 및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을 제시

● 제6장 보칙

- 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4조 (과태료)

- 법의 기본규정을 보충하는 일반론적 의미에서의 보칙을 명기

● 부칙

- 제1조 (시행일)
- 제2조 (지역문화재단 등에 대한 경과조치)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법의 시행과 경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부칙의 사항을 명기

● 목적

- 제1조 (목적)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을 다음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

1.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

3.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

4.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5. 문화국가 실현

● 의의

3대 기본법 완성과 함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지역의 문화자치 실현에의 기본틀 마련

지역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적 근거 제공

CHAPTER 02 .

시행령 위임사항의 주요내용 검토

● 제2조(정의) 제5호

- 제5호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생활문화시설의 상세분류 기준 / 유형
- 생활문화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

●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등)

- 제1항제8호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항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사항

- 수립/시행/평가의 실행주체 선정
- 시행계획 수립시의 구성내용
- 수립과정에서의 주제별 책무
- 수립/시행/평가의 과정

●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 제3항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환경 취약지역 선정 및 지원을 위한 대상선정 방식 및 기준 기본사항 정리
-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지원방안

●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 제4항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기관 지정방법(기관명 or 지정조건 부여 등)
-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 또는 자격기준
-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
- 지정 해제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 지정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3조(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자문사업단)

- 제3항 ③ 지역문화 진흥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정주체에 따른 자문사업단의 위상(국가/ 지자체)
- 자문사업단 기관 지정방법
- 자문사업단이 갖추어야 할 조건 또는 자격기준
- 지정된 자문사업단에 대한 관리
- 지정 해제/취소에 관한 사항
- 지정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 제2항 제4호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권한 또는 직무로서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 구성방식  
- 심의위원 구성분야 및 자격조건  
- 심의위원회 운영방식(회의개최/의견결정방식 등)

●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 제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항 제5호 5.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항 ⑥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도시 지정분야에 대한 총괄적 결정방식과 그에 적합한 기준 제시

-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사항

- 조성계획 승인방법 및 과정  
- 조성계획 승인의 기준  
- 문화도시 지정방법 및 과정  
- 각 과정절차에 따른 주체별 업무  
- 지정 신청주체(도시) 및 지정 권한주체(국가)의 업무

●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 제2항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한 관리
- 지정 해제 및 취소 방법 / 과정
- 그 밖에 취소의 기준

●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 제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의 방식(지원조직 / 예산 등)
-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방법 및 내용

●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 제1항 제1호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 제1항 제3호 3. 그 밖에 유·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항 제2호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3항 제3호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문예진흥법 상의 문화지구 관련 내용 전제 이관

●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제1항 제3호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단]

- 재단의 권한과 책무, 기능
- 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가능사항
- 지자체의 재단지원 방법 / 내용 / 형식

[위원회]

- 위원회의 권한 및 직무

●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 제4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방법 / 과정

●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권한 위임 / 위탁의 내용

● 제24조(과태료)

- 제1항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 문예진흥법상의 관련내용 이관



## 법 주요이슈 검토를 통한 시행령 기초안 구성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CHAPTER3. 법 주요이슈 검토를 통한 시행령 기초안 구성  
시행령 기초안 구성의 기본원칙

### ● 시행령 구성 시 기본원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1.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법에 적합한 시행령을 구성한다                    |
| 2.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          | ▶ 지역의 문화적 협력 및 상생을 추구한다.              |
| 3.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 | ▶ 지역정체성과 문화다양성에 기반하는 문화자치를 추구한다       |
| 4.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 ▶ 국민의 문화적 삶의 가치를 높여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
| 5. 문화국가 실현                 | ▶ 국가문화의 총체적 발전을 지향한다.                 |

**법** • 제2조(정의) 제5호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검토사항**

[생활문화시설의 상세분류 관련]

- 현재 법 상에서 정의된 생활문화시설의 정의는 있으나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에 대한 내용은 없음
- 별표 구성을 통해 생활문화시설의 유형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 필요

**시행령 초안**

제00조 (정의)

-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건립·운영되는 시설
  2. 시설 본래의 목적에 따른 운영과 함께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3.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의미하는 생활문화시설의 상세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③ 그 밖에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 •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수립등) 제1항 제8호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검토사항**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포함사항 관련]

- 현재 법 상에서는 지역문화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중요항목들만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

**시행령 초안**

제00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②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문화진흥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2. 지역문화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진흥 관련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문화도시의 육성과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8. 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9. 생활문화시설 등 지역에 설치되는 문화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

**법** •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등) 제6항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토사항**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관련]

- 현재 법상에서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구체사항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
- 중앙정부 - 광역 - 기초 상호 간의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주제 구분 및 관계설정이 필요하며 그에 요구되는 절차구성 필요

**시행령 초안**

제00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하 "사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사도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사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사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시·군·자치구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 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문화진흥사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요내용의 반영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구체적 실행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배치 및 투입에 관한 사항
  7.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관리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

21

**법** •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4항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토사항**

[양성기관의 범위 및 지정방식]

- 양성기관의 지정방식과 지정범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지정 시의 자격기준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문화진흥의 측면에서 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검토 필요

**시행령 초안**

제00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6.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관련 연구 및 사업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관련 교육 및 사업 경험
  3. 지역문화 관련 전문인력 확보수준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현장실습 비용
  3. 그 밖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3년마다 실적을 평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2

**법** • 제13조(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자문사업단) 제3항

③ 지역문화 진흥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토사항**

[자문사업단의 필요성 및 지정방식과 지정범위]

- 각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관지정이 필요한지의 여부  
(1개 기관단위 자문사업단이 될 경우 편협성 / 형평성 등의 우려)
- 만약 지정이 필요하다면 자문사업단의 지정방식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시행령 초안**

제00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

(1안)

전문 내용 삭제

(2안)

- ① 국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이하 '자문사업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및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를 포함한다)
  6.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당해 지역의 자문사업단(이하 '지역 자문사업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당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2. 당해지역의 지역문화에 관한 정책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소재 연구원

\* 후면 슬라이드 연결 구성

23

**법** • 제13조(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자문사업단) 제3항

③ 지역문화 진흥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토사항**

[자문사업단의 필요성 및 지정방식과 지정범위]

- 각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관지정이 필요한지의 여부  
(1개 기관단위 자문사업단이 될 경우 편협성 / 형평성 등의 우려)
- 만약 지정이 필요하다면 자문사업단의 지정방식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시행령 초안**

3.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당해지역의 지역문화재단
4.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중 당해지역의 지방문화원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사업단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정책관련 연구 및 사업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
  2.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정책지원 및 사업추진에 대한 경험
  3. 지역문화 정책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수준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자문사업단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시 여러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문사업단 및 지역 자문사업단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문사업단 운영 경비
  2. 자문사업단 컨설팅 경비
  3. 그 밖에 자문사업단의 운영에 드는 필요 경비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문사업단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3년마다 실적을 평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자문사업단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24

**법** •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제1항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검토사항**

[지정분야]

- 문화도시 지정 시 분야 및 장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성격과 특성을 총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방식 필요

**시행령 초안**

제00조 (문화도시의 지정분야)

-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심의위원회가 지역문화의 육성·보존·유지·발전을 위해 문화도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2.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분야

**법** •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제4항 제5호 / 제6항

- 5.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토사항**

[조성계획 수립 포함사항 및 승인과정]

- 조성계획 수립 시 포함 필요사항
-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과정의 설계

**시행령 초안**

제00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 ①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와 해당 지역의 문화환경 및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배치 및 투입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 투입계획에 관한 사항
  5. 각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과정 설계 및 구체적 실행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 시 해당 도시 및 지역 내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의 지속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영을 요청하는 사항
-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지역 내 지역문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가 속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결과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토록 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

●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제1항 제3호

-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검토사항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관계 설정]

-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치 및 역할에 대한 상호관계 문제 해결 필요

[지역문화재단의 기능 및 역할 / 타기관과의 상호관계 설정]

- 지역문화재단의 기능 및 역할 설정과 다른 지역문화 관련기관과의 역할에 대한 상호관계문제 해결 필요

시행령 초안

제00조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 ①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당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업의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운용 및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다른 지역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③ 이외에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

●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제1항 제3호

-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검토사항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관계 설정]

-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치 및 역할에 대한 상호관계 문제 해결 필요

[지역문화재단의 기능 및 역할 / 타기관과의 상호관계 설정]

- 지역문화재단의 기능 및 역할 설정과 다른 지역문화 관련기관과의 역할에 대한 상호관계문제 해결 필요

시행령 초안

제00조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 ① 지역문화재단은 당해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활문화 관련 사업추진 및 활동 지원
  6.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또는 지역문화재단 간 문화교류 및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및 지원
  9.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운용 및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 및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④ 이외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 및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THE END.

**끝. 감사합니다.**





## 주 제 토 론

---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 **'지역문화진흥법',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의 계기로**

김기곤(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진흥**

박승현(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장)

- **지역문화진흥법의 시대와 광역·기초문화재단의 위기**

김종휘(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조광호 박사의 발제문 말미에 제시된 지역문화재단 관련 향후 제언에 백분 동감함.

조광호 박사의 검토 내용에서도 충분히 인식되고 문제점들에 대한 시도문화재단 실무자 차원에서의 문제 의식들을 시행령 초안 조문별로 정리하였음.

추가 논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토론에 임함.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안(문화부 제공안)	관련 의견
<b>제1장 총칙</b>		
<p>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향의 정책사업들이 궁극적으로 "문화자치와 분권"을 지향하지 않을 경우, 이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별 문화정책 수준 평가와 줄 세우기, 중앙 정부 중심의 정책 틀에 지역문화가 종속되는 상황이 우려됨. 이는 시간을 두고 국가의 문화정책 인식 수준의 발전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도 함.</p> <p>- "지역문화융성이 국가문화융성"이라는 말은 국가가 융성한 지역의 문화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역이 국가의 촘촘한 정책 그물에 걸려서 모자이크를 이루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지역문화"란...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역 주민의... 생.</p> <p>3.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생활 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p>	<p>- 법 2조에서 정의하는 지역문화의 범위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부터 문화산업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동 법에서 주로 다루는 문화정책 영역은 생활문화와 문화지구인 점은 다분히 주무부서인 문화정책국의 업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기술한 면이 있음.</p> <p>- 특히 이 법이 상정하는 주요 정책 주체는</p>

<p>5.“생활문화시설”이란... . 8.“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p>	<p>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의미하는 생활문화시설의 상세분류는 <b>별표 1과</b> 같다.</p>	<p>지역문화재단인데, 시행령에서 그 역할을 명시함에 있어서도 예술지원 이외에 실제 중요 역할이 되고 있는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 -최근 거의 모든 정책주체들이 시민문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한다면 생활문화시설은 궁극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공공문화시설 다 포함하게 될 것임.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파악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요청/추천 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임 -“지역문화전문인력”이 “문화복지사”처럼 또 다른 자격증을 만들어 낸다면 우려할 제도임</p>
<p>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③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공식적인 사전 협의의 주체, 방식에 대해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함</p>
<p>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②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조광호 박사의 지적대로 이제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야하는 상황에서 조사-협의-종합계획수립-평가와 같은 체계적인 지역문화정책이 폭 넓은 영역을 포괄하여 제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를 전담하여 추진할 주체(지역문화재단 등)의 역량 배양과 행정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정책 평가는 기본적으로 예산 투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함. 추후 지역문화진흥 재정 집행 방식의 변화(포괄적 국고보조금, 기금, 민경경상보조금??)를 고려하여 성안되어야 할 것임</p>
<b>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b>		
<p>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③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④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유휴시설”이 “일반재산”이라면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도 문화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한 건이므로 이 조항의 별 의미가 없음 - “행정재산”까지 포괄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로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조차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맹점이 있음. 최근</p>

		신경민 의원의 국회 안전행정부 동법 시행령 개정 발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영리사업으로 보는 시각, 타 민간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으로 검토된 바 있음.(※상세 내용 별첨) 타 법과 조정이 없다면 무의미한 조항이 될 것임
<b>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b>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문화부에서 2차례 시행한, 지수화되어 줄세우기 식의 "지역문화지표 조사"는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하향식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라, 상향식 현장 조사결과의 종합이 되도록 각 지역의 조사주체가 지역으로 이관되어야 할 것임. -지역문화실태조사를 국가 승인통계로 격상하는 조치와 지역의 조사 주체에 대한 지정이 필요함
제12조(협력활동지원) ①...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협력에 필요한 각 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지역 간 협력활동 지원 사업예산이 고려되어야 함. 문화재단 간 협의체 구성 및 협력사업 수행에 대해 예산 지원하는 건이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함
제13조(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자문사업단) ① ...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 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문화 진흥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 단 지정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문사업단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3년마다 실적을 평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문사업단의 역할이 지역문화재단들이 강화해야 할 정책관련 업무 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문화사업 개발과 중첩되거나, 실적평가가 그러한 사업 성과평가 중심으로 될 경우 지역에서 또하나의 경쟁적인 사업주체가 양산되는 것으로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함
<b>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b>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지역문화재단들이 현재로서는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의견없음. 그러나, 추후 문화재단의 역할 영역으로 고려 필요함
<b>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b>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지역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	-지역문화를 "예술지원"부터 "문화산업"까지 포괄한다면 지역문화재단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면이 있고, 오히려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은 시행령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순이 있음

<p>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지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문화부 지침이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갈음할 수 있도록 법령 간 조정이 필요함</p> <p>-지자체의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표준조례안 제공이 필요함</p>
<p>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p> <p>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지역문화재정 확충 시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p>
<p>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p> <p>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이미 각 시도문화재단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처분된 지방문예진흥기금과의 관계 정리가 필요함.</p>

■ 참고자료

1.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작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건] 검토 보고서(2014. 2.)

【신경민의원안】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신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신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3호에<sup>1)</sup> 따르면,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지방공사.지방공단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비영리사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법인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법인이 지방공사.지방공단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011년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법인의 평균 부채비율이 273%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재정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공사.지방공단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법인은 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비중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출자.출연법인의 비영리사업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민간 법인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지방공사.공단은 특수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영리사업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은 사실상 상법을 적용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을 감안할 때, 지방공사.공단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2. 안전행정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14-02-0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의 계기로

김기곤(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 지역문화진흥법이 갖는 의미와 전망은?

- 첫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간 10년의 논의 과정이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법적 장치로 마무리된 것
- 둘째, 상징적 의미로 보면, 문화영역에서 지엽적 담론으로 존재했던 '지역문화'가 개별법을 통해 명시적이고 독자적인 위상을 갖게 된 것
- 셋째, 문화실천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문화의 의미 구성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담론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인 것
- 현재의 지역문화진흥법은 특정한 내용을 담고, 명확한 방향을 안내하고 있는 듯하지만, 지역문화에 대한 규정 범위와 실행 내용이 극히 제약되어 있음
- 앞으로 '지역문화'를 통해서 '좋은 지역'은 어떤 것이고,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새로운 문화 실천이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역문화를 경제, 정치, 교육 등의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 영역과 주민의 마음과 사회적 관계 등 미시적 분야까지 포괄해서 사고하도록 할 것임
- 지역문화는 정형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공간을 단위로 구성원이 공유하고 만들어 가는 총체적인 삶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지역문화의 의미를 지역 스스로 새롭게 채워가는 작업이 중요

## □ 지역문화진흥법의 이념적 지향은 적절한가?

-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 다양성 확보, 삶의 질 향상,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규정
- 2012년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에서부터 줄곧 주장해 온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의 원칙이 명시되지 않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가 주요 목적으로 설정됨
- 문화분권과 자치는 직접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지역의 재발견과 중앙집중과 권위주의적 문화행정을 벗어나 분권, 자율, 다양성을 실현해 가는 사회적, 정치적 미래 발전 방향과 연관된 주요 가치이자 이념임
- 현재의 법률은 문화격차라는 양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 관점, 지역문화가 축적되는 과정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지원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끊임없는 상대적 격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음
-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새롭게 제기한 핵심적인 영역인 생활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참여권과 접근권의 확대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음
- 지역은 삶의 구체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의미를 창조하고 발신하는 다양한 가치들의 총화'로서의 문화 개념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공간적 단위임



- 지역문화진흥을 단지 장르나 시설에 대한 빈번하고 편리한 이용 정도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주민의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기초한 문화영역에서의 '주체적 자기결정권'의 확대를 보아야 함
- 지역문화진흥법은 참여권과 접근권에 제한되어 있는 <문화기본법>의 문화권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권 중에서 '발전권' 실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즉, 지역문화진흥의 목적을 인간의 사회적 삶의 여러 문제들과 결부시켜 개인의 감성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발전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
- 현행 지역문화진흥법은 이념과 가치 설정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문화의 본질적 발전을 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시행령 마련 또한 이러한 제약을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음
- 그렇지만 법은 합리성의 영역에서 운영되는 강제적 장치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법이 갖는 긍정적 측면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편으로는 지역문화가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공동의 실천 과정 산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됨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주요 관점은 우선 지역문화를 삶의 여러 요소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영역에서 바라보고, 실천 이념은 자율, 참여,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분권'으로 설정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여권, 접근권, 발전권을 포괄하는 문화적 권리의 확대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되어야 함

**□ 중앙과 지역의 합리적 역할 분담이 포함되어 있는가?**

- 문화분권을 위해서는 중앙문화의 지역적 보급(문화의 민주화)에서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 다양성 확보(문화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주체들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이 중요
- 현재의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좋은 파트너십에 기초한 공동의 의무주체보다는 국가는 뒤로 슬쩍 빠지고, 지방정부에게 책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기술된 느낌
- 많은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의무주체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함으로써 국가가 수행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큼
- 특히 지역의 문화재정이나 문화행정의 수준이 취약한 상황을 감안하면,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집행 및 배분 조치와 국가의 책무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비용을 일차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에 기반한 지역문화진흥 활동으로 지역단위에서 자율적인 재정확충이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함
- 지역의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의 폭을 넓혀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포괄적 보조금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보완
- 포괄적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고, 중앙재정을 지역재단이나 중간매개 조직 등 민간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영역을 더욱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게 함

**□ 지역 간 협력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는 충분한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실제적인 사업 영역을 보면 지역 간 협력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큼
- 특히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차원에서 문화개발 사업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 간에 지정을 둘러싼 과열 경쟁을 불러올 수 있으며, 지정 여부에 따라 정치적·심리적 측면의 박탈감을 주어 새로운 격차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원래 의도했던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 발전"보다는 지역이 유사한 방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획일적인 '짝퉁 문화도시'를 만들어 내고, 결과적으로 지역문화는 '지속적인 단조로움'으로 빠질 수 있음
- 현재와 같은 지원 기준으로는 동기부여를 통한 지역의 창의성 확대보다는 평가가 용이한 양적인 성과

를 강조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프로젝트 양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지정 기준에 질적인 측면과 실행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행령에 사업 계획이나 사업 평가에 '주민 참여'와 '주민의 관계 변화' 등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시스템 도입을 명기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핵심적 협력 주체인 지역문화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는 현재의 두 기관 사이의 비대칭적 의존 관계를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협력관계로 재편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
- 지역문화재단이 전문성을 살리고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 문화행정의 혁신 지침을 시행령에 담아야 함

#### □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방안은 담겨 있는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
- 지역문화 역량은 본질적으로 지역문화 창조 역량을 의미하고 이것의 핵심은 지역 주민의 '문화적 자력화'임
- 문화적 자력화는 문화예술이라는 장르적 한계를 넘어 소통, 배려, 나눔 같은 문화적 가치가 우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주민들의 정신적 기반을 갖추어 가는 것에서 시작됨
-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역량을 정책생산 역량이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자력화보다는 전문가들의 문화역량 강화로 사고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을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는 사업주체로 변질시킬 수 있음
- 지역문화 역량은 지역사회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의 축적 정도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주민들의 창의적 사고 등 지역사회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들의 총체적인 표현임
- 위와 같은 의미의 지역문화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수요 발굴, 커뮤니티 활동 공간의 조성,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학습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조치나 프로그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문화도시 지정 기준에도 지역문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나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지역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령으로 명기하는 방안이 필요

#### □ 광주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 지역문화의 구성 요소를 역사, 사람, 공간, 제도, 행정, 의식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
  - 광주 지역문화지표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지표항목을 개발하여 지역문화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문화 활동의 단위(단체 혹은 동호회), 문화환경(시설, 공간,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 등 생활문화의 주요 조직과 거점 공간을 미리 파악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풀 구성, 협력형 문화거버넌스 구축과 문화행정 시스템 개선, 생활문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논의 전개
  - 지역의 전문인력, 기관, 단체, 마을단위 활동가 등을 파악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관련 정책 및 사업 구상(마을만들기 등과 연계사업 검토), 문화재정 확보 방안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주요 영역에 대한 공론화 작업(세미나, 포럼, 토론회 등)을 조직 운영
  - 광주문화재단의 자율성, 전문성, 안정성 확보를 중심에 두고, 광주시와의 협력 관계 재구축과 향후 기초자치체의 문화재단 설립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구상

○ 법령, 조례, 사회·문화적 규범 등 검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비교 검토를 통한 사업의 영역과 각 주체의 역할 재확인
- 지역문화진흥법의 문화도시 지정, 문화지구 지정 관련 조항 검토,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성 문제 검토, 지역문화진흥법의 문화도시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면 광주는 어떤 문화도시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함
- 광주시 문화예술 관련 조례의 운영 검토와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전문팀 구성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 관련 대표 법률 및 광주인권헌장의 문화적 이념과 가치를 지역 사회의 문화규범으로 확산시켜 가기 위해 '광주문화헌장' 제정 추진

#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진흥

박승현(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장)

주최 측에서 시행령 발제문에 대한 토론 영역을 구분해 주었고, 필자에게 주어진 영역은 다음과 같다.

>생활문화가 문화기본법, 문예진흥법에 정의되어 있는 문화복지 또는 문화기본권과 어떻게 차별/연결되는 개념으로 정립될 것이며, 그에 맞춘 실질적인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적당한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로서 광역/기초/문화원/문화의집 등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포괄하는 방안은? 또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가?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동아리에 대한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보조금이 아닌 축제와 네트워킹 지원으로 전환이 대세인데..),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 변화될 사업 방식에 적절한 법 체계인가?

3개의 질문이 “법적 근거로서 적당한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가?”, “적절한 법 체계인가?”라는 내용에서도 보여 지듯이, 법의 개념과 용어정의 그리고 관계법 간의 관계가 아직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지속될 문제인 것이 사실이어서, ‘법을 전제로 한 시행령’에서 다룰 내용을 약간 넘어서기는 하지만 중요한 문제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필자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 I. '생활문화'와 개념정의

### 1. 문화기본법에서의 '문화' 개념

- 문화기본법 제3조(정의)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을 말한다.
- 유엔이 정하고 유네스코가 주도해 온 세계문화발전 10개년(*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t 1988-1997*) 계획에서는 문화<sup>2)</sup>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기존에는 '문화'를 경제의 상부구조나, 경제의 부수적인 것. 또는 문화와 예술을 혼용하여 쓰면서, 문화를 좁은 의미의 예술로 국한시켜 보는 시각 등이 만연해 있었음.

“문화란 어떤 사회나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들의 총체적인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술과 문자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믿음을 포함한다.”

- 유엔이 새로운 개념의 10개년 발전계획을 시작하게 된 것은, 기존에 서구가 내세운 발전방법론은 문화 획일화, 전통문화 말살, 환경 파괴, 가치 상실을 야기해 경제적 성장도 이룩하지 못하면서 문화 주체성마저 상실하고, 선진발전국과 빈부 격차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기존 발전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에서 비롯된다.
- 유엔이 10개년 계획을 출범시켰을 때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으며, 나중에 세계문화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케야르는 이 계획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발전을 위한 노력이 실패한 것은 대개 발전 프로젝트에서 인간적 요소(문화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관계, 신념, 가치, 동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복합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 바로 이러한 발전<sup>3)</sup>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문화'인데,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므로 인간적 요소를 모두 모은 문화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여기서 문화란 예술이나 장식적 요소를 뜻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관계, 신념, 전통, 가치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임. 이러한 생각은 지금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물질적 경제성장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진 인류는 종전 후 약 40년 동안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 한국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2000년대 초중반을 거쳐 상당히 심도 있는 문제제기가 된 바 있고, '영역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극복하고 '원리로서의 문화'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협회의 문화개념이 갖는 한계'와 '공동선을 지향하는 문화적 태도'를 제기한 이후 꾸준히 실천적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sup>4)</sup>

3) 발전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의 근본적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 발전이란 경제성장 과정, 생산과 생산성, 개인 수입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때로는 이런 성장에서 확산된 혜택). 다른 관점에 따르면, 발전이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향상시키는 과정임. 유엔개발계획은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발전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해마다 내고 있는데, 이 인간발전을 보는 시각(좁은 의미에서 경제발전과 대조되는)은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문화적 조건에서 바라보는 시각임.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란 필수적인 물품과 서비스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우며,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함.

4) • 협회의 문화 개념이 갖는 한계

- 그동안 문화를 예술이나 문화유산 등 특수한 영역으로만 이해해 왔음. 이 때문에 국가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 차원의 문화정책 또한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등을 중심으로 설정해왔음.
- 문화에 대한 이러한 협의적 이해는 개인, 지역, 국가의 발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화적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문화가 삶에 영향을 주는 제 영역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문화적 접근이 절실한 교육, 노동, 보건복지, 여성, 환경, 도시설계를 포함한 공간 등의 문제에 문화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켜 버렸음.
- 결국 협의의 문화 개념에 기반 한 문화정책은 문화가 국가적·지역적 차원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기능들을 축소함으로써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만듦. 궁극적으로는 개인, 지역, 국가의 발전에 문화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상실을 가져옴.
- 원리로서의 문화와 공동선을 지향하는 태도
- 문화적 관점에서 또는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 효율보다는 인간을 중심에 놓는 정신적 태도,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지기보다 공동선을 중심에 놓는 사고를 요청함.
- 이러한 정신적 태도는 감성적 토대를 갖고 있음. 그것은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즉 공동체 의식임.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민의식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전제하지 않는 발전은 오늘날 수많은 사회적 난제들을 낳았듯이 계속 새로운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
- 문화는 감성과 상상력에 기반 한 창조적 능력임. 감성은 공동선을 중심에 놓는 정신적 태도의 정서적 토대를 제공해주며, 상상력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함. 문화의 이러한 본질적 특성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제

2. 문화예술진흥법에서의 '문화예술' 개념과 예술패러다임의 변화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이는 기존의 '문화' 개념 하에서의 '예술' 정의이다. 이를 지금에서는 '장르예술'이라 표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표1> 예술의 패러다임 변화<sup>5)</sup>

	고급예술의 관점	도구예술의 관점	생활예술의 관점
목적	예술 그 자체	비예술적 목적(경제 발전, 정치적 선전)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상호이해
주체	전문 창작가, 비평가, 애호가	경영자, 정치가, 기획자	시민-예술가, 예술가-시민
예술	숭배의 대상	기능적 수단	창의적인 과정
성격	문화자원-차별논리	동원자원	사회자본-연계적

- 기존의 예술에 대한 인식은 고급예술의 관점과 도구예술의 관점이 지배적이라면 생활예술은 이 두 관점 모두를 지양한다. 생활예술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생성하고 구현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즉, 생활예술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속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자아정체성을 모색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생활예술은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해온 고귀한 정신적 산물인 예술의 창조적 역량과 작품을 더욱 고양시켜 낼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 오히려 고급예술과 한정된 예술시장, 전문가들만의 예술작업이 어떻게 새로운 출구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예술가 및 예술 자체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생활예술은 담고 있다. 그것은 결코 기존의 예술가를 배제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가가, 진정으로 새롭게 전환되고 있는 사회에서 고귀한 인류유산의 창조적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전 사회적으로 확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법에서의 개념 상충과 향후 방향

- 문화예술진흥법 vs 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 각각의 법에서 쓰고 있는 '문화'와 '예술' 개념의 격차와 혼용으로 인한 상충문제가 크다.

<표2> 각 법의 용어 비교

	구 개념	신 개념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	'문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	'생활문화'
향후		'문화' '생활예술' '장르예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것임.(문화관광부, 『창의한국』, 2004. pp19-20)

5) 박승현,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의미와 가치-생활예술을 위한 소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위한 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 2013. 6. 5. p14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기존의 '문화'와 '예술'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 문화기본법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 정의와 동시에, 기존의 '문화예술'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 새로운 개념의 '문화'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어떤 사회나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들의 총체적인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 '생활문화'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 정의를 받아들일 경우, "지역의 주민이 .....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문화적 활동'의 폭이 (문화기본법에 의하면)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까지를 포함한 '활동'으로 확대되게 된다.
- 이렇듯 '문화예술', '지역문화', '생활문화'에서의 '문화'는 서로 다른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신조어인 '문화복지'가 80년대초에 탄생하여 30여년에 이르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최소한 문화계에서 통용되고 있듯이, 하나의 개념이 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여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실천을 필요로 한다.
- '생활문화'는 근대의 역사에서 실종되어 버린 사실, 즉 예술은 인간 일반의 기본권이자 시민 누구나에게 잠재되어 발현될 수 있는 창조적 역량이라는 개념을 일깨우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 시작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새로운 개념의 '문화'와는 달리, '생활문화'는 기존의 구 개념과 혼용되어 있다. 필자는 '문화'와 더불어 '생활예술'이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정신에 맞는 개념 정의라고 본다.
-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시간과 실천을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부분적이거나 새로운 개념을 법의 체계를 통해 시작하고 있다는 의의를 적극적으로 살리고, 이를 근본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II. 지역의 생활문화진흥방안 : 생활문화 지원과 생활문화시설

### 1. '생활문화' 지원사업의 핵심과 원리

- ① 지원을 통해 '생활문화'의 싹을 도려내는 실패정책
  - '생활문화진흥'이 법제화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활문화'의 가장 큰 위기다!
  - 왜인가? 기존 관점의 '생활00'이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자발성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움직이는 조직이 그 동력은 사라지고 공적자금에 기생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온갖 비리로 얼룩진 '생활체육'의 사례는 검색포탈에서 수 없이 이어진다.
  - 법제화 되는 출발점에서 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 없다면 그 결과는 '지원법을 만들지 말고 공공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의 큰 피해를 낳게 된다.
  - 왜냐하면 제도적 지원에 의해 한번 조직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를 교정하는 것은 부분적 치료 밖에는 안 되기 때문이다.
  - 그래서 처음에 '생활문화'의 모든 정책에서 '자발성의 원리'가 가장 큰 전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문화예술 동호회를 소액 현금 지원하는 '지원사업'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이러한 지원사업이 오히려 회원들이 스스로의 결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월1만원~3만원씩 내면서 동호회를 운영하는 자발성을 훼손시켜 왔다.
- ② '생활문화기획자'(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의 발굴과 육성
  - '생활문화'의 성패가 달린 것은 사실 '생활문화기획자'의 역할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시민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살려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 이 사람들을 발굴하고, 기획과 추진의 권한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생활문화기획자'로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자료화하고 활동원리를 매뉴얼화해야 한다.
- '생활문화기획자'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사례발표와 지속적인 교육, 상호의 정보교류와 노하우 업데이트를 통해 실천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 ③ 문화클럽<sup>6)</sup> 네트워크와 운영위원회의 조직

- 자생적, 자발적, 자율적 동호회 활동이 지속되고 발전하려면 문화클럽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한데, 가장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다.
- 문화클럽 네트워크 조직을 관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면 관변단체화 될 가능성이 높다.
- 관변단체화 되면 문화클럽의 자발성과 주체성은 바로 사라지며, 지역문화클럽 정책을 추진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 문화클럽 네트워크는 철저히 자발적이고도 주체적인 지도력을 중심으로 형성되도록 해야하며, 운영위원회의 조직원리와 운영과정에서 그 정신이 살아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조직의 노하우가 이어지도록 임원의 인원수 중 절반 이하에 한하여 1년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임기를 마친 임원은 명예위원이 되어 지도자로 활동하며, 네트워크의 모든 클럽대표들이 1번씩 돌아가면서 임원이 되도록 한다. 임원이 되면, 개별클럽의 시야에서 벗어나 네트워크적 시각을 가지게 되고, 지역사회의 전망을 가지면서 성장하게 된다.
- 문화클럽 네트워크는 향후 지속성을 가진 조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형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④ 문화공헌 프로젝트 조직

- 취향공동체로 출발한 문화클럽은 자연스럽게 공헌활동을 귀착점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문제는 클럽의 개별단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클럽과 클럽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문화공헌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처음에는 2개 이상, 나아가 5개 이상의 클럽들이 팀을 이루어 문화공헌을 위한 발표활동을 하게하고, 궁극적으로는 동네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핵심활동 클럽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문화공헌 프로젝트와 마을만들기의 결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취향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결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 이 문제는 조급할 필요가 없으며, 취향공동체의 경로와 지역공동체의 방식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을 서서히 찾아나가면서 특장을 살려주어야 한다.

### ⑤ 동네축제와 도시클럽축제

- 동네축제는 초등학교를 둘러싼 범위의 동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를 일컫는다. 동네축제는 지역문화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델 중의 하나다. 문화클럽은 바로 그 동네축제의 핵심주체가 되며, 그것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자발성과 주체성은 지역성(공공성)과 결합되어 문화클럽정책이 추구하는 이상적 형태를 만들어 가게 된다. 동네축제는 거꾸로 동네에 다양한 문화클럽을 생성시켜 내며, 새로운 클럽과 기존 클럽의 네트워크와 재생산을 확대하면서 생활 속에서 뿌리를 갖춘 지속성 있는 조직으로 성장한다.
- 도시클럽축제는 지역문화회관을 둘러싼 범위의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를 일컫는다. 지역문화회관의 규모 및 도시의 인구수에 따라 범위가 다르지만 형태는 유사하다. 도시클럽축제는 2가지의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동네적 기반을 아직 갖지 못한 취향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축제와, 또 하나는

6) 문화클럽은 “자생적, 자발적,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종(同種) 또는 이종(異種)의 아마추어 및 준전문적 수준 문화관련 소모임의 연합체”로써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체계에 의해 운영이 관리”되는 특성을 가짐.(김세훈, 「문화클럽 조성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p19)



동네축제를 기반으로 확대된 형태의 축제다. 현재까지는 전자의 경우가 우선 만들어지기가 쉽다. 이 역시 양자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향후 상호 보완되어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 ⑥ 공간 정책

- 지역문화클럽 정책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 할 것이 공간 문제다.
- 문화클럽은 모임공간, 연습공간, 발표공간을 필요로 한다.
- 궁극적으로 문화클럽 네트워크가 자발적이고도 주체적으로 독자적인 '네트워크의 공유공간'을 운영하면서 자립할 수 있을 때 지역문화클럽 정책은 완성된다.
- 문화클럽은 스스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의지와 자원을 모아야만 지속적 존립이 가능하다. "아쉬운 놈이 우물 파야, 그 우물을 지킨다"(성미산마을극장 유창복 극장장) 그 때 부족한 자원(재정과 행정)을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원해야 한다.<sup>7)</sup>
- 국가나 지방정부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이를 '문화클럽 네트워크'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때 문화클럽 네트워크는 회원 수입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공공활동과 수익창출 활동도 병행할 수 있다. 즉, 시민 스스로가 문화공간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주체로 성장해 나간다.
- 문화클럽 네트워크가 문화공간을 운영할 정도의 역량과 활동이 축적되면, 동네축제와 도시클럽축제 프로젝트 및 문화공헌 프로젝트와 클럽지원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수익창출사업과 공공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도 있다. 단, 앞서도 강조했듯이 가장 큰 전제는 지원이 주가 아니라 스스로 회비를 통해 자생한다는 전제하에 보조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 가장 궁극적인 상은 이렇게 자발적인 문화클럽의 네트워크 조직이 주체적인 결정구조를 가지고, 회원의 회비를 바탕으로 수익사업과 공공보조사업을 통해 지속성을 보장하는 조직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럴 때 국가나 지방정부는 문화인프라에 속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네트워크 조직에 위탁하고, 공공적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 2. 법제화를 통해 보완할 지점 몇 가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제7조 생활문화지원 1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동호회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2항)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수립 등)해야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한 시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 비전과 로드맵 속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문화클럽 네트워크 조직이 스스로 결정하며 생활문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창출을 도모하여 네트워크 운영 및 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문화클럽 네트워크가 자발적이고도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필수다.
  - 스스로 회비와 공간운영의 수익을 통해 자립적 조직이 가능해질 때 생활문화가 꽃필 수 있다.
- ④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행령안 제24조(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1항에 '5.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사

7) '당사자주의'와 '보충성원리'는 생활문화 정책의 원칙이다. 당사자주의란 무엇이든 필요한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공공이 제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보충성의 원리이다.

업'과 같은 항목을 넣어 주요사업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화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8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의하여 향후 기초단위에 적합한 '생활문화지원조례'(안)을 만드는 작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의 시대와 광역·기초문화재단의 위기

김종휘(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틀 안으로 문화예술에 관련한 기존의 법률들이 빨리 들어가며 교통 정리되는 것이 시대의 추세라면, 지역문화진흥의 요체를 **지역의 문화자치 관점**에서 재발견하고 재구성하려는 총체적 접근이 필수적이며 문화자치의 관점에서 **각 지역의 문화진흥 계획을 자발적으로 재설계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노력이 문화예술계의 선행 논리가 되어야.
- 이렇게 행하자면 문제를 직면해야. 하나는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정치, 경제, 사회적 과제와 맞물리지 않는 문화자치의 영역이나 과제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처럼 임하는 관성 문제. 지방자치의 현 단계 주요 과제로 부상한 **주민참여예산(직접 민주주의), 사회적 경제, 공유도시, 마을공동체, 생활문화(커뮤니티 아트)** 등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인식과 참여는 어떤 수준이며 상태인가.
- 다른 하나는 지역의 문화자치 에너지를 **생활의 현장들로부터 끌어 올릴 수 있는 지역의 관계 기반과 소통 채널**을 현재의 광역·기초문화재단이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 광역·기초문화재단은 현재 생활 현장과 풀뿌리의 주체들을 자기 조직화하지 못한 채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정책적 파트너 위상도 취약한 상태로 너무나 쉽게 정부의 전달체계로 재편 고착될 수 있는 위기 상황.
- 정부 예산지원 방식의 바람직한 변화나 지역문화정책의 광역 이관이나 기초 이양 등의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는 필요조건은 광역·기초문화재단이 **시행령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제안하고 행동**하는 것이지만, 그 충분조건은 광역·기초문화재단이 각기 안주해온 기존의 틀을 넘어서서 과감한 협력과 공동의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전국 지역문화재단의 새로운 전망을 주창**하는 것.
- 이러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같이 활성화되어야 6.4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민선6기 지방자치의 시기에 **광역·기초문화재단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광역·기초 자치단체 장들의 인식도** 개선될 수 있으며, 문화자치의 관점에 입각한 각 지역의 문화진흥 계획과 실행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 할 수 있음. 이 길을 개척하지 못하면 정부의 전달체계 편입에 따른 유불리를 다투는 일만 남아.
- 문화융성이 정권의 구호를 넘어 지역의 문화진흥으로 뒷받침되어 내실을 갖추는 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몫이 크겠지만, 지역문화진흥법의 시대라는 화두와 직결해서는 **광역·기초문화재단이 공급과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와 과제 중심으로 예술가 및 지역 시민과 공감의**

**협력체계로 스스로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와 의사의 공동표현을 요구받는 때임.**

- 이점에서 전국의 지역문화재단이 공동의 문제인식을 발동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광역·기초문화재단 사이에 기금 사용, 공간 운영, 주체 양성의 3대 과제를 놓고 협력하고 공유하는 정책 제안과 사례 제시를 목표로 실천적 논의 테이블을 가동하는 것이 절실함.**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민선6기의 지역문화진흥 공약과 정책에 문화자치의 가치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지역문화재단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 끝으로 보태면 임명직인 지역문화재단의 대표들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대차대조표를 넘어 **시대정신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해야 하는 것'을 제때에 같이 제안하고 공론화**하는 대표들 상호간의 연대를 우선하는 노력이 각급의 지역문화재단 조직이 갖는 힘의 한계를 넘어 공동으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길이 아닐까, 이것이 직업 윤리의 중요한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

## 참 고 자 료

---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 「지역문화진흥법안」 제정안
- 「지역문화진흥법안」 전문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소개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정책 협의기구입니다. 2012년 10월 26일 부산에서 발족식과 1차 문화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참여 기관은?

2014년 현재까지 경북, 울산, 전북,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해당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 • 참여 기관 및 참여 대표자 현황(2014.3.18 기준)

- 강원문화재단(김성환 이사장)
- 경기문화재단(엄기영 대표이사)
-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고영조 원장)
-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연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장)
- 대구문화재단(문무학 대표이사)
- 대전문화재단(박상언 대표이사)
- 부산문화재단(남송우 대표이사)
- 서울문화재단(조선희 대표이사)
- 인천문화재단(김윤식 대표이사)
- 전남문화예술재단(정광덕 사무처장)
- 제주문화예술재단(김은석 이사장)
- 충남문화재단(최운현 사무처장)
- 충북문화재단(강형기 대표이사)

### 운영 목적은?

13개 시·도 문화재단은 지역문화 발전이 국가문화 발전의 핵심이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시급함을 함께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방향으로 공동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 호혜와 협력의 정신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한다.
2. 국가의 문화정책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책 제언을 한다.
3. 국가의 문화예산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4. 문화재단 조직운동을 둘러싼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공동 정책연구사업 등을 통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 정책과 공동사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향후 계획은?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공동 정책연구사업 등을 통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 정책과 공동사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활동내역·연혁

2012. 8. 22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협의체 결성 합의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가 모여 차기 정부 정책 제안, 지역문화진흥법 입법 등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보다 지속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협의체 결성을 추진

2012. 10. 26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결성 / 1차 대표자 회의 진행

향후 활동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협약 체결

- 한국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선언문 <지역문화 발전이 문화복지국가의 핵심이다> 발표

협의체 결성 후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필요성과 과제를 역설

- 문화정책 세미나 <지역문화 발전이 국가문화 발전의 핵심이다> 개최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의 기조 발제, 19인의 발제·토론자와 100여명의 문화재단 관계자가 참여한 세미나에서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한 제안을 총망라하는 기회 마련

2013. 1. 18

- 2차 대표자 회의 진행

2013년 운영계획, 새정부 문화정책 제안,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지침 제정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한 협의 및 간사기관 선정(부산문화재단)

- 문화정책 세미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안정적 기반 확보 방안> 개최

재원의 감소, 위탁사업의 증가 등 시·도 문화재단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법·제도 개선, 기금 운영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제안> 발표

세미나의 토론 결과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국회와 문화부에 전달

2013. 5. 30 ~ 6. 1

- 시·도 문화재단 실무위원 정책워크숍 개최

박근혜 정부의 지역문화 진흥정책과 연계한 시·도 문화재단과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의 역할 설정 및 정책제안을 위한 심도있는 합동 연구 시행

- 3차 대표자 회의 진행

정부의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관점 전환과 국비매칭사업의 문제인식 촉구, <지역문화진흥법(안)> 개선안 마련 제시, 국비매칭사업으로 확대되는 문화예술 분야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고용안정성과 질 제고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의 공동노력 촉구,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2014년 공동사업 예산 편성 추진 논의

2013. 10. 8 ~ 10. 9

- 문화융성 정책세미나 개최

지역문화 진흥을 통한 문화융성 지역순회 토론회 종합 세미나 개최(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초청)

- 문화기부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초청)

- 4차 대표자회의 진행

2014년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공동사업 계획 수립 및 차기 간사기관 선정



**2014. 1. 14**

• **시·도 문화재단 실무위원 회의 개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대표자회의 일정공유,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 통합관리방안 모색

**2014. 2. 4**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현장 부산 토론회 개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및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및 조직 통합에 대한 제언 및 대응방안 논의

**2014. 2. 13**

• **시·도 문화재단 실무위원 회의 개최**

2014 대표자회의 광주 일정 공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포럼일정 확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역할 및 대표자회의 사업계획 마련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안

## 1. 추진경위

- 이병석 의원 「지역문화진흥법안」 발의('12.6.19)
- 도종환 의원 「지역문화진흥법안」 발의('12.8.29)
- 김장실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11.27)
- 교문위 법안소위 의결('13.12.24, 수정안), 교문위 의결('13.12.26)
- 법사위('13.12.30) 및 본회의('13.12.31) 의결

## 2. 제정 이유

- 현행법 체계는 지역문화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기본적 법률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 내용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안 제15조)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자문사업단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안 제10조, 제13조, 제1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지구의 권장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4. 기대 효과

-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5. 향후 계획

- 하위법령 제정('14. 상반기)

# 지역문화진흥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추구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3조(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자문사업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승인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6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장 벌칙

제24조(과태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문화재단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



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제6호 중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6조 중 “위원회.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을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 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구동)

TEL: 062-670-7400 [www.gjcf.or.kr](http://www.gjcf.or.kr)